

소 장

원 고 ○○공업주식회사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 대표이사 ◉◉◉ 전화·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공업주식회사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대표이사 ◈◈◈
전화・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물품대금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하여 20○○. ○○. ○○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

- 1. 원고는 철강H빔을 만들어 피고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로서, 20○○. ○. ○.경부터 피고에게 철강H빔을 공급해오던 중 20○○. ○○. ○. 납품한 철강H빔의 대금 ○○○원을 지금까지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
- 2.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철강H빔의 대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위 철 강H빔을 납품한 날의 다음날인 20○○. ○○. ○○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거래명세표1. 갑 제2호증세금계산서1. 갑 제3호증인수증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각 2통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2통1. 소장부본1통1. 송달료납부서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○○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◆◆◆ (서명 또는 날인)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 소멸시효일람표 мм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□□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□□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절차 및 기 간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기 타	손해를 증명할 필요	없이 특별히 민법 제397조),	그 손해배상액은 채권자가 그 정한 바가 없으면 법정이율에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